

[일련번호 : 31]

# 양 천 구

## 시 정 요 구

**제 목** 공사 제경비(안전관리비 등) 정산 소홀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 1. 업무개요

△△과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 계약 및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3조(적용 범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의 건설공사 중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를 계상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7조(사용기준) 및 제8조(사용금액의 감액·반환 등)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도급인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사용내역의 확인)에 따라 도급인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착공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 시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환경 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을 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한다. 환경관리비는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비'로 구분되며, 환경보전비는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 설치·운영 등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계상된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가 확인한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 및 제3항은 발주자가 도급업체의 보험료 부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보험료 납부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 지출액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3조 및 「계약사무처리요령」 제64조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며, 실제 납부·지출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근거로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계약당사자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은 검사 과정에서 계약 위반 또는 부당 사항 발견 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준공 또는 기성 청구 시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 등 제경비 정산 내역 및 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 집행사진 등)를 제출받아 그 진위와 사용 적정성을 확인해야 하며, 부당 청구 금액은 감액·정산하거나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는 공사 준공금 지급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건설폐기물 처리비)에 대해 사용내역 및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간이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공사 제경비 정산에 대한 검증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특히, △△과는 ‘중앙로55길 주변 노후도로 정비공사’ 관련하여, 공사 시행업체가 제출한 준공계 서류를 근거로 준공처리를 하였으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증빙 서류로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사실 조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비를 지급함에 따라, 공사비가 과다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공사 제경비 정산 소홀 내역

공사명	공사기간	준공금액 (천원)	제경비 정산 내역		비고
			청구내역	부적정 내역	
○○사업	'23.4.17. ~ '23.12.31.	320,370	안전관리비(신호수)	정산서류 미비 (신호수 근무일지, 근무사진 등)	
○○공사	'22.03.15. ~'22.12.22.	1,148,776	건설폐기물처리비	정산서류 미비 (세금계산서 등 비용지급내역 미확인)	
○○공사	'24.03.26. ~'24.10.25.	550,20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전자세금계산서 확인 결과 발급 여부 확인되지 않음	
○○공사	'24.03.18. ~'24.06.13.	509,850	안전관리비(기림막펜스)	정산서류 미비 (세금계산서 등 비용지급내역 미확인)	
○○공사	'24.09.25. ~'25.05.31.	576,107	안전관리비	정산서류 미비 (거래명세표 업체와 세금계산서 발행업체 상이)	
○○공사	'25.03.17. ~'25.08.08.	741,3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간이세금계산서 사용	
			안전관리비 (기림막,안내간판,현수막)	간이세금계산서 사용 및 금액 상이	
			안전관리비 (동영상기록관리)	정산서류 미제출	

####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 5. 조치할 사항

##### △△과장은

과다 지급한 공사비를 해당 업체로부터 환수하시기 바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검토·이행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공사 대금 지급 시 제경비 정산 및 증빙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정)